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Sejong City Council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위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교육안전위원회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위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53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5일
교육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: 2021년 5월 10일
- 발 의 자: 손인수 의원 외 7명
- 회부일자: 2021년 5월 11일
- 상정일자: 2021년 6월 15일
- 의결일자: 2021년 6월 15일
 -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
- 의결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- 세종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,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세종시 학교

현장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교직원 연수와 자살시도학생,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와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(안 제8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3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7조 등 (붙임 1)
- 예산조치: 필요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붙임 2)

5. 검토의견

- 조례안은 세종시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제도화

하는 것으로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근거함

-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 자살학생·자살시도학생 발생현황*, 정서 행동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 현황**을 살펴보면, 체계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높음

〈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 자살학생·자살시도학생 발생현황* 〉

(단위 : 명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
자살	5	0	3
자살시도	3	2	2

<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>

〈 최근 3년간 정서행동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 현황** 〉

(단위 : 명, %)

연도	실시학생수	자살위험	
		자살위험학생수(비율)	자살위험학생수 중 전문기관연계학생수(비율)
2018	15,119	169(1.1%)	141(83.4%)
2019	16,995	243(1.4%)	226(93.0%)
2020	18,114	159(0.9%)	148(93.1%)

<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>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(안 제2조)에서는 적용 대상 및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’의 교육활동 범주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,

- (안 제3조)에서는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(안 제4조)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,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,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 구축,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,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등을 규정하였고,
 - (안 제6조부터 제7조)에서는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(안 제9조)에서는 자해·자살시도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,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상담·심리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 및 자살시도학생 가족 등의 명예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함을 규정함
 - (안 제11조)에서는 업무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
-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
 - 동 조례안과 유사 조례인 「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」에서도 ‘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’에 대해 규정

(제9조¹⁾)하고 있는바, 안 제9조는 유사조례 내용과 일관성을 확보 하였으며, 대상별 **맞춤형 지원**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
-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를 거쳤 으며, 입법예고와 집행부와의 협의기간을 두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등 **조례 개정**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교직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운영의 주체가 학교장으로 규정된 바,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강화 실태를 **모니터링**하고 **지원 하는 시스템**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1) **제9조(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)**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·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참고 사항

○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(9곳)

교육청명	자치법규명	제정일자
서울특별시교육청	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8. 1. 4.
부산광역시교육청	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9. 5. 22.
인천광역시교육청	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9. 11. 11.
울산광역시교육청	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20. 5. 21.
경기도교육청	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21. 1. 4.
충청북도교육청	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8. 12. 28.
충청남도교육청	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9. 4. 10.
경상남도교육청	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16. 8. 4.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'21. 4. 14.

6. 토론: 생략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: 없음

10. 기타사항: 없음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, 맞춤형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,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”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,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·육체적 건강의 보호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
3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
4.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
5.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교육감 소속 공무원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교직원 역량 강화)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,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)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·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

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·자살 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지원)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·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

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
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4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
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
5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**[시행 2013. 1. 7.]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리와 의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, 시가 시행하는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,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

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2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
3.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
4. 교육 및 홍보시책
5.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6.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
7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8.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)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「정신보건법」 제2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6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
3.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또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

② 자살통계는 반드시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으로 자살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·홍보 등)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, 산하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·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(민간단체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·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·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안 제8조)
-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(안 제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의회 의원 손인수